자 문 계 약 서

"In

본 계약서는 ㈜아이피에스 (이하'갑')가 의뢰하는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캠코에 스지인베스터스㈜ (이하'을')를 기업인수 자문기관으로 위임하는 계약서이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을'이 기업인수 자문기관으로서 계약에 의한 자문업무를 제공하게 되며, 동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쌍방간에 약정한다.

제 1 조 (업무범위)

인수 자문기관으로서 "을"이 "갑"에게 제공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기업인수에 의한 투자전략의 구성을 위한 자문
- 2. 기업인수 대상기업의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 3. 대상기업체 주주와의 교섭 및 투자의향서 작성을 위한 자문
- 4. 기초사업 타당성 분석 및 대상기업 정밀조사를 위한 자문
- 5. 각종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에 관한 자문
- 6. 기업인수 계약서 등 법률적 서류작성을 위한 자문
- 7. 기업인수 자금조달전략에 관한 자문
- 8. 기타 기업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문업무

제 2 조 (공 개)

'갑'은 기업인수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본 자문업무와 관련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을'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을'은 '갑'에게 자문 업무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기로 한다.

제 3 조 (면 책)

'갑'은 '을' 또는 그를 대리하는 컨설턴트 등 임직원들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는 한, 본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





실, 피해, 의무, 책임으로부터 '을' 및 그 임직원들을 면책시키기로 한다. 단, 소송에서 '을' 또는 그를 대리하는 컨설턴트 등 임직원들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는 판결이 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책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면책되지 않을 경우 '을'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기 수령한 자문수수료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

제 4 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본 기업인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교환된 모든 정보를 각자 기업인수 자문업무를 위하여서만 사용하고 사전 승인없이 기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제 5 조 (자문 수수료)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기업인수 자문수수료를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유지수수료

'갑'은 본 자문계약서 체결이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기업인수 자문에 대한 계약유지수수료로 일금 6,100,000원(부가세 별도)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성공보수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갑'이 '을'의 자문에 힘입어 기업인수 계약서를 체결한 시점 또는 그에 준하는 본 기업 인수목표에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갑'이 인수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하기로한다. 단, 성공보수의 지급규모 및 지급방법 등은 인수기업이 확정될 시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키로 한다.

- 3. 외부용역비 및 수행경비 등 부대비용 변호사 법률자문수수료, 공인회계 감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출장비, 통신료 등 각종 업무수행에 따르는 부대비용(OUT-OF-POCKET EXPENSE)은 "갑"이 별도로 부담하되 외부용역비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을'이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4. 상기 제수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갑'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 6 조 (중도해지)

- 1. 본 자문계약은 '갑' 또는 '을'이 30일전에 정당한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을' 또는 '갑'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해지될 수 있 다.
- 2.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7 조 (계약의 종료 및 연장)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상호합의 하에 6 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신의성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서로 긴밀히 협조토록 한다.

제 9 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 1.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 2.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0 조 (기 타)

- 1.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 본 계약서상 일부 조항의 무효는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본 계약은 당사자간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 4. 본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 쌍방 기명날인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5 년 2 월 1 일

계약당사자 : "갑"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장 호 승 전인



"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3층

캠코에스지인베스터스㈜

대표이사 임 창 빈

